

# 학사운영위원회규정

<제정 2022. 08. 09. >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‘대학’이라 한다)의 학사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사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조직,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 위원은 교무처장, 교무부처장, 학사관리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그 외 단과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사관리(수업, 학적관리, 성적평가 등)에 관한 사항
2. 학사 관련 정책수립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
3. 수업평가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학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**제4조(임기)**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여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.

**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하고 회무를 처리한다.

③ 서기는 위원회의 회무를 기록, 보존하며 필요한 자료를 정리 제공한다.

**제6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안건이 있는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(세부사항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8월 09일부터 시행한다.